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준엽 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	보 도 자 료 2021. 6. 8.(화)

제 목	A증권사,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
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※ 2020. 3. 26. 개최된 **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**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▣ 서울남부지방검찰청(경제범죄전담부 부장검사 김락현)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설계·운용·판매에 관여한 A증권사에 대해 수사한 결과,

- A증권사 임직원 5명과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혐의를 확인하여, '21. 5. 25. 특경(사기),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1명을 구속 기소,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,

- 금일(6. 8.) 임직원들의 위 범행에 대한 주의·감독 의무 소홀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하여 A증권사를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함

▶ 'A등급 사채 등에 투자'로 설명한 Ⓐ펀드가 실제로는 '무등급 사채 등에 투자된 사실'을 확인하고도, Ⓐ펀드에 편입되는 子펀드 167억 원 상당을 판매

▶ Ⓑ펀드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자 A증권사의 손실을 방지할 의도로,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TRS 추가담보금을 확보하고 Ⓑ펀드의 환매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, Ⓐ펀드 자금 576억 원을 Ⓑ펀드에 지급하고,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Ⓑ펀드에 편입되는 子펀드 603억 원 상당을 판매하여 이를 편취

▶ 라임 펀드를 포함한 11개 펀드를 판매하면서, 투자자들에게 판매수수료가 없음을 고지하였음에도 TRS 수수료에 가산하여 우회수취

※ 라임 펀드의 TRS 업무를 취급하는 A증권사 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대상 회사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도 함께 기소

1 피고인

- 가○○(37세, A증권사 TRS운용부서 팀장, **구속**)
- 나○○(46세, A증권사 TRS운용부서 부장)
- 다○○(51세, A증권사 판매부서 부장)
- 라○○(49세, A증권사 판매부서 팀장)
- 마○○(57세, A증권사 판매부서 본부장)
- 바○○(42세, 前 라임자산운용 부사장, 별건 구속)
- A증권사(라임펀드 스왑증권사 및 판매사)

※ 총수익스왑(TRS)은 자산운용사가 투자금 및 이를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받은 대출을 합하여 증권사 명의로 투자상품을 보유하는 레버리지(차입) 계약임

2 공소사실 요지

1 A증권사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및 펀드 구조 변경 등 범행

- **투자제안서와 다른 내용의 불완전 펀드 판매**

- (가○○, 나○○, 다○○, 라○○, 바○○) '19. 3.경 라임 Ⓐ펀드가 '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'하는 등의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Ⓐ펀드에 100% 편입되는 167억 원 상당의 子펀드 판매 **[자본시장법위반]**

- **펀드 간 이해충돌 및 자금 돌려막기를 위한 펀드 판매**

- (가○○, 나○○, 바○○) A증권사의 TRS가 제공된 라임 Ⓑ펀드의 현금 유동성 부족 등을 인식하고, 이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증권사의 손실을 방지하고자,

① '19. 3. ~ 7.경 라임 Ⓑ펀드에 가입되는 OEM펀드[1]를 설정함과 동시에 라임 Ⓐ펀드를 OEM펀드에 가입시켜, Ⓐ펀드 투자금 576억 원을 Ⓑ펀드의 A증권사에 대한 TRS 추가담보금 조달용으로 지급하여 Ⓐ펀드의 이익을 해하고,

② 신규 子펀드 자금을 Ⓑ펀드의 환매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에도 우량 자산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Ⓑ펀드에 편입되는 子펀드 603억 원 상당을 판매하여 편취 **[특경(사기),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]**

- **펀드 판매수수료 부당수취**

- (가○○, 나○○, 다○○, 라○○, 마○○) '18. 2. ~ '19. 7.경 11개 펀드를 판매하면서, 실제로는 펀드 판매수수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TRS 수수료에 가산하여 우회수취하면서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표시·판매 **[자본시장법위반]**

- **A증권사의 선임감독의무 위반에 자본시장법상 '양벌규정' 적용**

- (A증권사) 위와 같이 증권사 임직원들이 사기적 부정거래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·감독 의무 소홀 **[자본시장법위반]**

2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취득

- (가○○) '18. 9. ~ '19. 4.경 라임펀드 투자 과정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대상 회사와 자신이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 간 자문계약을 끼워넣어 투자대상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원 상당의 사적 이익 취득 **[자본시장법위반]**

1) OEM펀드는 형식적으로는 타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블라인드 펀드(Blind Fund)이나, 실질적으로 그 수익자인 라임자산운용에서 펀드의 설정, 운용 등을 전적으로 지시하는 펀드를 의미함

3 수사 경과

- ’20. 7. 금감원, 수사참고자료 송부
- ’20. 10.~ A증권사, 라임자산운용 등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
- ’21. 5. 25. 가○○ 구속기소, 나○○ ~ 바○○ 각 불구속 기소
- ’21. 6. 8. A증권사 불구속 기소(양벌규정)

4 참고사항

- 증권사 임직원들이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공모하여 투자자산의 실체와 설명의 불일치 등 투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사항을 감춘 채 펀드를 설계·운용·판매한 위법사항을 확인하고, 증권사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한 사건으로,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
-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수사청으로서 금융투자상품의 설계·운용·판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임